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2.01.01] (일부개정) 2021.10.28 조례 제2563호

> 관리책임부서명 : 복지기획팀 관리책임전화번호 : 061-470-2183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국가보훈 기본법」등 국가 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 12. 15., 2018. 3. 29. >

제2조(기본이념) 영암군수(이하 "군수" 라 한다)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,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군민통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토록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6. 12. 15., 2021. 10. 28.>

- 1. "희생·공헌자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가.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
- 나.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
- 다.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
- 라.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
- 2. "국가보훈대상자"란 희생·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
- 3. "국가보훈관계 법령"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.
- 4. "단체"란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「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·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.
- 5. "보훈복지"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.
- 6."고엽제후유의증" 이란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 또는 남 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 등으로서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.

제4조(예우 및 지원대상)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영암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한다.

제5조(군민의 책무) 모든 군민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전라남도(이하 "도" 라 한다) 및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12. 15.>

제6조(군의 책무) ① 군수는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희생·공헌자의 공훈선양 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의 예우 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삭제 <2016. 12. 15.>
- ③ 군수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시책을 수립하거나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7조(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) 군수는 도 및 군의 예우시책 확산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.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예우 및 공훈선양사업)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주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1. 국경일·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

- 2.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
- 3. 희생·공헌자와 관련된 특정지역·시기·사건 등과 연계한 각종 추모사업 또는 기념사업 실시 등
- 4.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와 사료의 발굴 지원
- 5.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·운영
- 6. 보훈관련 기념일·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·격려
- 7.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조사 시 축하 또는 조문(근조기·근조화 증정, 장례비 지원 등) 실시
- 8.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 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
- 9. "호국·보훈의 달"에 지역 출신 희생·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
- 10. 주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

제9조(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) 군수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- 1. 국가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
- 2.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 등 활성화
- 3. 공항·항만·도로·공원·광장·철도역·지하철역 등과 건축물·조형물·사적지 등에 희생·공헌자의 이름 등의 명칭 부여

제10조(단체 예산지원) 군수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2. 15.>

- 1.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·운영
- 2. 호국·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등 순례비
- 3.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
- 4. "호국·보훈의 달"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
- 5. 그 밖에 군수가 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1조(보훈명예수당 등 지급) 군수는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0. 28.>

- 1. 보훈명예수당 : 월 10만원
- 2. 사망위로금: 20만원
- 3. 명절위문금(설, 추석) : 각 10만원

[본조신설 2016. 12. 15.] [전문개정 2020. 12. 10.]

제12조(지급대상) ① 제11조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 영암군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당사자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제14조에 따른 중지 사유 발생 시 유족 또는 가족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7. 6. 29., 2020. 12. 10., 2021. 10. 28.>

-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
- 2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・제11호・제14호・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선 순위자 1명
- 3.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자가 사망한 경우, 그 배우자
- 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제1항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을 받은 사람 중 사망자로 한다.

③「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과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서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 <개정 2017. 6. 29.> [본조신설 2016. 12. 15.]

제13조(지급 결정) ① 제11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·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, 수급 대상자의 범위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5조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.
- ③ 군수는 제1항에 의거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,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수당신청서를 접수하거나,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읍·면장은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그 변동내역을 제출하여 야 한다.
- ⑤ 수당은 매월 15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되, 수당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 [본조신설 2016. 12. 15.]

제14조(지급 중지) ① 수당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한다.

- 1. 사망한 경우
- 2. 다른 시·군·구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
- 3.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
-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중지는 사유 발생 해당 월의 10일을 기준으로 하고, 11일 이후 중지사유 발생 시는 해당 월까지 지급한다. [본조신설 2016. 12. 15.]

제15조(환수 조치) 이 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.

- 1.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
- 2. 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
- 3. 잘못 지급된 경우 [본조신설 2016. 12. 15.]

제16조(보훈복지 등)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해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주민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2. 15., 2017. 6. 29.>

- 1. 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 가로 판매대 구두 수선대 교통카드 판매대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허가 위탁
- 2. 군이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 체육시설 박물관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등의 감면
- 3. 군이 직접 설치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
- 4. 군이 직접 설치·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묘지의 일부를 「국가보훈대상자 묘역」으로 조성
- 5. 군이 설치·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의료기관(병·의원, 보건소 등)의 진료비 감면
- 6. 군이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시설의 교육비 감면과 보조
- 7. 군이 직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및 이용안내 표지판 설치 시 "국가유공자" 우선 표기
- 8.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가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·등록세 및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모든 민원증명 발급 수수료의 감면
- 9. 군이 실시하는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
- 10. 지하철·도시철도 등 수송시설의 이용료 감면
- 11. 고령 및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증 무료진료증 발급 및 무료건강검진 예방접종 등
- 12. 군이 주관하는 개인택시 면허 시 우선순위 부여

- 13. 군이 건립하는 주택에 대한 입주
- 14. 신규 공무원 채용 시 취업보호대상자 임용
- 15. 경로자 예우 또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시책 마련 시 고령 또는 중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우대
- 16. 생존 애국지사, 1~3급에 해당하는 중상이 국가유공자, 2인이상 전사자 유족 및 독자사망 유족에 대한 정기적인 생활실태 확인 과 사망시 장례지원
- 17. 독립유공자 묘소의 개·보수에 따른 경비 지원과 안내 표지판 설치 등
- 18. 군이 관리하는 복지관련 성금액 중 일정비율을 보훈관련 복지시설에 배정
- 19. 「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」에 의한 창업 및 기업 활동 지원
- 20. 그 밖에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

제17조(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) 군수가 희생·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군수가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미 제정·시행하고 있는 다른 조례 등이 이 조례의 기본이념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개정하여야 한다.

부칙 <개정 2016. 12. 15. 조2281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개정 2017. 6. 29. 조2311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11. 9. 조2327>

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3. 29. 조2347>

이 조례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. 12. 10. 조2510>

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. 10. 28. 조2563>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